



제30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남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현미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2024. 10.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남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과

-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10일 정현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지역서점의 소멸위기가 지속·심화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2가 신설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지역서점에 대한 지원 근거 및 정의를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근거 규정 마련(안 제1조)
- 나. 지역서점의 정의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규정(안 제2조)
-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3조)
- 라.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제12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불임1
- 나. 예산조치 : 불임2 (비용참조)
- 다. 관련부서 : 도서관정책과
- 라. 입법예고 : 2024. 10. 10. ~ 10. 15. (5일간)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지역서점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와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지역서점의 정의를 상위법에서 지역설정에 따라 지역서점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 제7조의2항에 따라 지역서점의 요건을 갖춘 서점으로 규정함은 지역서점의 법적 정의에 대한 전국적 표준을 준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 필요성 및 형식·체계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자료 1 :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 19곳 조례 제정 (광역 1곳 + 기초 18곳)

[표1]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제정 현황

(24. 9. 기준)

순번	지자체	조례명	제·개정일자	출판법 근거 표시
1	경기도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08. 07.	○
2	과천시	과천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확대에 관한 조례	2023. 04. 12.	○
3	광명시	광명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09. 25.	×
4	광주시	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4. 05. 01.	○
5	고양시	고양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03. 30.	×
6	구리시	구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10. 06.	○
7	김포시	김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1. 08.	×
8	남양주시	남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04. 06.	×
9	동두천시	동두천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4. 07. 03.	×
10	성남시	성남시 지역서점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04. 03.	×
11	시흥시	시흥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4. 05. 09.	○
12	안양시	안양시 지역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03. 03.	○
13	양주시	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12. 17.	×
14	여주시	여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09. 28.	×
15	용인시	용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07. 02.	×
16	이천시	이천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2. 29.	×
17	파주시	파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09. 27.	○
18	평택시	평택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07. 21.	×
19	화성시	화성시 지역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07. 19.	×

■ 참고자료 2 :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현황

- 경기도 인증 남양주시 지역서점 : 16곳 (신규 5곳 + 갱신 11곳)

[표2] 남양주시 지역서점 경기도 인증 현황

(24. 4. 기준)

순번	서점명	주소	인증기간	인증
1	일신서점	와부읍 덕소리 476-3 일신프라자 110	2022. 11. 15. ~ 2024. 11. 14.	갱신
2	곰씨네 그림책방	다산지금로 142 대길프라자 301호	2022. 11. 15. ~ 2024. 11. 14.	갱신
3	블랙버드 북숍	가운로2길 114 미성프라자 104호	2022. 11. 15. ~ 2024. 11. 14.	신규
4	호평서점	늘을2로 26, 207호	2022. 11. 15. ~ 2024. 11. 14.	신규
5	독립서점 호선 빛을 만든다	진건읍 사릉로용정1길 8, 미림빌딩 102호	2022. 11. 15. ~ 2024. 11. 14.	신규
6	도심산책	와부읍 덕소로 242-15, 비101호	2023. 3. 18. ~ 2025. 3. 17.	신규
7	명지도서	사릉로 16-2, 1층	2023. 9. 23. ~ 2025. 9. 22.	갱신
8	가운서적	퇴계원읍 퇴계원로23번길 11-3, 1층	2024. 2. 14. ~ 2026. 2. 13.	갱신
9	평내문고	경춘로1256번길 10 평내프라자 201호	2024. 4. 29. ~ 2026. 4. 28.	갱신
10	개구리서적 호평점	늘을2로 32, 호평프라자 203호	2024. 4. 29. ~ 2026. 4. 28.	갱신
11	동네북	순화궁로 357, 화성프라자 303호	2024. 4. 29. ~ 2026. 4. 28.	갱신
12	오롯이서재	덕송2로6번길 28-22	2024. 4. 29. ~ 2026. 4. 28.	갱신
13	책방이또자라	평내동 660-1 이석영신흥상회 207호	2024. 4. 29. ~ 2026. 4. 28.	갱신
14	태성문고	와부읍 수레로 8	2024. 4. 29. ~ 2026. 4. 28.	갱신
15	별내서점	순화궁로 349	2024. 4. 29. ~ 2026. 4. 28.	갱신
16	착한책방	수동면 비룡로782번길 43-163	2024. 4. 29. ~ 2026. 4. 28.	신규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이하 “지역서점”이라 한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따라 지역서점의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관할 지역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결과 지역서점이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관할 지역의 도서관(「도서관법」 제3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이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을 이용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7.>

⑥ 제2항에 따른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8. 10.]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재정 수반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 개정안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 및 지역서점 정의 재규정을 위한 것으로, 재정 수반 요인이 없음

4. 작성자

문화교육국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